



- 제248회 임시회
2006. 3. 22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2월 20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2월 21일

□ 제안 이유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부교육감 설치규정을 명문화 하고, 2006. 1. 12.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괴산교육청의 명칭을 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

- 부교육감의 직급을 교육규칙으로 정함(안 제2조)
- 교육감 밑에 두는 부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권한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)
- 별표2 및 별표4의 관할교육청란중 “충청북도괴산교육청”을 “충청북도괴산중평교육청”으로 함(안 별표2, 별표4)

□ 검토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,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교육감의 직급규정과
그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조직의
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됨

- 다만 부칙의 시행일을 규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2조의 개정
조항과 제5조의 신설조항의 시행일을 2006년 3월 1일로
정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